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220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론 종결 2023. 1. 13.

판결 선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21.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1. 11. 25. 접수 제30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B는 원고와 2009. 5. 6.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5. 6.부터 2010. 5. 4.까지(이후, 2022. 4. 22.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 원고와 B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B는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대위변제

B가 2021. 10. 12.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C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2022. 5. 26. 원고는 B를 대위하여 136,110,992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136,566,394원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습니다.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B는 2021. 11.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1. 11. 25. 접수 제30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습니다.

5)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신용보증약정이 위와 같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1. 10. 12. B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B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제외하고도 타에 채무가 많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을 위한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1.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실, 즉 B의 무자력 및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무자력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1. 10. 12. 경 신용보증사고의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22. 5. 26. B를 대위하여 C은행에게 136,110,992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용정보조회회신과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채무는 872,139,394원에 이르나, 적극재산은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밖에 없었다.

따라서 B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의 선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공시지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0,533,600원(= 53,200원(2021년 기준, 갑제4호증) × 198m²)을 초과한 1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에 금전 거래 등 거래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지인 또는 친인척 사이도 아니며,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가 집행되는 등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는 사해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종화

별지